

청주지방법원 2024. 6. 13 선고 2024가단53478 판결 [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5. 2.

판 결 선 고 2024. 6. 13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94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4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남동희

별지